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 의 재 이 용 촉 진 및 지 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54호, 2025. 3. 25. 공포, 9. 26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시설 위치 등 조문 정비(안 제16조제1항 제2호나목)

- “발전과정”을 “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”으로 하고, 재이용시설 위치에 “공장”을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그 발전과정”을 “발전소(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)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”으로, “발전소(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)”를 “발전소 또는 공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설치기준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(이하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”라 한다)가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(이하 “온배수 재이용사업자”라 한다)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·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	제16조(설치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. 다만,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.	2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온배수 재이용시설: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<u>그 발전과정</u> 에	나. ----- ----- ----- <u>발전소(원자력발</u>

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<u>발전소(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)</u> ② (생 략)	<u>전소는 제외한다)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과정----- 발전소 또는 공장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생활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24